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계획안은 2003년 11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광탄면 시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금촌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광탄면 신산리 광탄중·고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사유지 및 금촌택지지구내 주차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파주 3일의 한 분이신 방촌 황희선생의 영정을 모신 문화유적지에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안내소를 신축하고,
- 판문점·제3땅굴 등 안보관광객과 경기 북부지역의 관문인 자유로를 이용해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파주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광안내의 역할이 전무하여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관광벨트 최초 접점인 市 관문에 위치한 자유로 휴게소 2층에 관광안내소(Visitor Center)를 건립하여 종합 관광안내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재산명	위 치	면적(m ²)	금액(천원)	비 고
광탄공영주차장	신산리 229-6,7	토지 : 1,062m ²	348,775	취 득
금촌공영주차장	금촌동택지지구	토지 : 1,130.8m ²	530,000	취 득
황희정승영당지내 안내소	사목리 산122	건물 : 50m ²	200,000	신 축
관광안내소	산남리 40-134	건물 : 165m ²	250,000	신 축

3.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

○ 광탄 공영주차장 부지

- 대상토지 광탄면 신산리 229-6, 답, 698m²
 광탄면 신산리 229-7, 잡, 364m²
- 취득예정가 348,775천원(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 예정임)
 $[(260,000\text{원} \times 698\text{m}^2) + (250,000\text{원} \times 364\text{m}^2)] \times 1.28 = 348,775\text{천원}$
- 주차면수 50면
- 소 유 자 최진언, 편명식
- 취득방법 협의취득
- 국토계획 일반주거지역
- 활용용도 공영주차장 부지
- 관련법규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 금촌 공영주차장 부지

- 대상토지 금촌택지지구내(금촌동 522-3) 주차장 1,130.8m²
- 취득예정가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로 취득 예정임.
 $468,695\text{원} \times 1,130.8\text{m}^2 = 530,000\text{천원}$
- 주차면수 60면
- 소유자 대한주택공사
- 취득방법 수의계약
- 국토계획 일반주거지역
- 활용용도 공영주차장 부지
 - 2004년 부지취득후 정지작업
 - 2005년 또는 2006년 도비지원으로 주차타워(180면)건설·운영
- 관련법규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 황희선생 영당지내 안내소

- 건물위치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122번지
- 연 면 적 50m²(약15평)
- 재 산 액 200백만원(신축예정가격)
- 토지소유자 파주시장
- 취득방법 건물신축
- 활용용도 관광객을 위한 관람안내소
- 관련법규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 관광 안내소

- 건물위치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40-134외 『자유로휴게소』 內
- 면 적 1,484㎡(총 449평)중 2층 신축 165㎡(50평)
- 재 산 액 250백만원(신축예정가격)
- 토지소유자 경기도
- 취득방법 건물신축
- 활용용도 파주시의 종합 관광안내소
- 관련법규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4. 검토의견

- 동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광탄면 시내지역 및 금촌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과,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와 자유로 휴게소내 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광탄 공영주차장부지 취득건은 광탄면 신산리 229-6번지외 1필지 1,062평방미터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광탄시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 금촌 공영주차장부지 취득건은 금촌택지개발지구내(금촌동 522-3)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60년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택지개발지구 조성원가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해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황희선생 영당지내 안내소 신축건은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 122번지상에 50평방미터(약15평) 규모의 안내소를 신축하여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람 안내소로 활용할 계획임.
- 관광안내소 신축건은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40-134외 자유로 휴게소내 기존 1층 휴게소 건물에 약165평방미터(50평)규모의 2층을 신축하여 파주시의 종합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 북부지역의 관문인 자유로를 이용해 연간 약 3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광안내소가 없어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유로 휴게소 2층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여 종합적인 관광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현 자유로휴게소 부지와 휴게소 건물이 경기도 소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을 포함한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地方自治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 [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